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
관리 ·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·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113
----------	-----

2022. 11. 30.(수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제405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(2022년 11월 24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이제승)

가. 제안이유

-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항목 적용 문구 일부를 수정하고,
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농업인 단체, 협회 등의 참여 · 활동을
촉진하기 위해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
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 ·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문 문구 일부 수정(안 제12조제3항)
-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 항목 신설(안 제12조제3항제8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·무농약 농가(이하 “친환경농가”라 한다)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에 관심있는 관행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
-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행 농가 중 일부는 각종 지원을 받고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친환경 농가 또는 친환경 전환 희망 농가를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
- 또한, 친환경농업인 간 정보교류, 결속력 강화,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업인 단체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

나. 조례안의 주요 개정조항에 대한 의견

- 안 제12조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생산·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·유통 지원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친환경 농업인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
- 이 조례안 제12조제3항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(평가항목 확대)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생산·유통 등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여도 평가항목을 기존 ‘농업환경의 유지 실적,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실적 등’에서 ‘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협회 등 민간단체 참여·활동기간’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요소를 7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음
 - (용어 정비) 기여도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‘각 호 모두’에서 ‘각 호’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의 평가기준과 일치되도록 용어를 정비함

- 친환경농업 기여도 평가항목의 확대는 친환경 농업인등을 차등적으로 지원하여 관행 농업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유도와 친환경 농업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, 정책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
- 다만, 안 제12조제3항제8호 신설에 따른 ‘협회 등 민간단체’ 현황, 민간단체에서 활동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, 민간단체 참여 및 활동기간에 대한 평가 기준,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

다. 종합의견

- 이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전환과 친환경농업인 단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- 다만, 차등지원을 위한 기여도 평가시 민간단체 참여 및 활동기간의 평가기준, 민간단체의 현황과 단체활동의 이점 등 조례 개정의 기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·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·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·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 모두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협회 등 민간단체 참여 · 활동기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 생산·유통지원) ①·②(생략) ③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<u>각 호</u> 모두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2조(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 생산·유통지원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 <u>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협회 등 민간단체 참여 · 활동기간</u>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·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5조(민간단체의 역할)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, 유기식품등,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 · 유통 ·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(이하 “민간단체”라 한다)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 · 유기식품등 · 무농약농산물 ·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 · 훈련 · 기술개발 · 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· 유기식품등 · 무농약농산물 ·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 · 개발과 보급 및 교육 ·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 · 개발 · 보급하거나 교육 ·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 · 훈련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,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· 훈련을 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·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

교육훈련기관(이하 “교육훈련기관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·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·유통·수출 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, 생산자단체, 유통업자,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,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
 2.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
-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조(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)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농어업 환경의 유지·개선 실적
2.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(이하 “유기식품등”이라 한다),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·유통·수출 실적
3. 유기식품등, 무농약농산물, 무농약원료가공식품,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
4.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·보급 실적
5.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·훈련 실적
6. 농약·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
7.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 항목 신설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와 유기식품 생산·유통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기준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

○ 작성자

충청북도 유기농산과장 최 낙 현